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5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강대식 · 안철수 · 구자근

권영세 • 이종배 • 김형동

강승규 · 김예지 · 조지연

배준영 · 김용태 · 임종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실비 변상)"을 "(훈련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훈련비의 지급 및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제11조(훈련비 등)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	
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훈련비의 지급 및 그 밖의 실
수 있다.	비(實費) 변상